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8

제출년월일 : 2022. 10. 1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정의(안 제2조)

다.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치(안 제3조)

마.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에 148,342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7. 27. ~ 2022.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3)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개인정보검토 : [별지1]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신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평창군민들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에 둔다.

제4조(사용·수익 등)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센터 총괄부서와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센터의 공간적 부분, 제4조에 따른 입주 자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다.

③ 센터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영위하는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되, 군 소관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사업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
   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사업
   라.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4.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법률구조공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2에 따른 법인
6.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창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평창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평창군 어린이급

식지원관리센터

제5조(사용료 등) ① 입주자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무상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간·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센터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승인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거나 유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책무) ① 입주자는 본 조례에 따라 선량한 입주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하며, 센터 총괄부서의 조정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입주취소 등) ① 입주자가 더 이상 사용·수익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유지 및 보수)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개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로 오염, 파손, 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사무소 및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입주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법인명</td><td></td><td>대표자</td><td></td><td>법 인
등록번호</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법인
설립일자</td><td colspan="2"></td><td>법인설립
근거법령</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운영
계획</td><td>주요사업
내 역</td><td colspan="5"></td></tr>
<tr><td>예산사용
내 역</td><td colspan="5"></td></tr>
</table>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평창군 사회복지시설 입주자 선정 및 관리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성명), 소재지, 연락처	평창군 사회복지시설 입주자 선정 및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창군 사회복지시설 입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별첨1]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아동복지법」

다.「노인복지법」

라.「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영유아보육법」

사.「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란 법률」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입양특례법」

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

업 등에 관한 법률」

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서.「장애인연금법」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

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보도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총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

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드엥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차지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테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구조법률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구조법률공단을 설립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6·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2(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의 설립) ①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이하 “월남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월남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월남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월남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13까지, 제25조부터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참전자회”로 본다.

⑤월남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

장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 · 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야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지원에 대한 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어린리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리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인력배치(청사관리원)

나.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및 운영비

나. 추계 결과 (소요예산액 : 148,342천원)

1)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 30,222천원

-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2) 운영비 : 105,120천원

- 사무관리비 : 28,920천원
- 공공운영비 : 76,200천원

3) 시설비 : 10,000천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공간 리모델링 : 10,000천원

4) 자산취득비 : 3,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연락처	(033) 330 - 21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245,150	148,342	139,854	141,441	143,108	817,895
인건비		27,605	30,222	31,734	33,321	34,988	
일반운영비		125,045	105,120	105,120	105,120	105,120	
시설비		90,000	10,000	0	0	0	
자산취득비		2,500	3,000	3,000	3,000	3,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